

# 「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1월 2일, 지광천 의원 대표발의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4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11월 4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광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 근거 법령(안 제3조)
-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(안 제6조)
-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(안 제8조)
- 환수, 징계요구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조례안은

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 
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 
취지가 있습니다.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 근거 법령

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

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

안 제8조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

안 제9조에서는 환수, 징계요구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 
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은

행정안전부의 “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제정 요청”에 따라  
관계법령을 근거의 자치법규안을 기준 한 것으로  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,

○ 입법례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에서 실행하여 제정률 43%이며,  
강원도는 7개 지자체(속초, 양양, 영월, 원주, 철원, 춘천, 횡성)에서  
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업무추진비”란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.
2. “의원”이란 평창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.
3.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평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)**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「공직선거법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업무추진비 사용제한)**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할 수 없다.

1.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
2. 심야시간(23시 이후), 휴일,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

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. 다만,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3. 친목회, 동우회, 동호회, 시민·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
4.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
5.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
6.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
7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

**제5조(예산집행 자료 작성)**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**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(신용카드, 현금 등)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정보공개 범위)**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**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

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**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,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